

# 食品衛生에 關한 法規 小考

事務官 朴 奉 相

保社部・食品衛生担当官室

## 一. 法規의 必要性

于先 食品衛生法規라고 하는 것은 어떤것인가 하고 어렵게 生覺하지 아니하고, 쉬운方法의 하나로서 우리를 生活周邊을 中心으로 한번 살펴 볼必要가 있다.

모든사람은 各自가 맡은바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誠實하게 遂行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같이 自己의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誠實하게 行하려고하는 것은 누구나가 貧乏하게되지 않을려고 모두들 热心히 일을하고 있다고 生覺된다.

그러하지만 其中에는 貧乏한 사람도 있다. 이와같이 貧乏한 사람이 있는 것은 무슨 原因일까 하고 生覺해 볼必要가 있으며 이런貧乏한 現象은 혼히 “이世上에서 存在하는 것이다”라고 判断해 버릴것이 아니라 그 原因을 한번 分析検討할必要가 있을 것이다. 즉, 그와같은 貧乏한 사람은 自己의 일을 계을리하여 그와같이 貧乏하게 되었을까? 하고 生覺할 수도 있고 이와 反對로 계을리는 하지 않아도 貧乏하게 되는수도 있는것 같이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은 貧乏의 形態가 여러 가지로 存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貧乏의 原因을 具體的으로 分析評価해 볼必要가 있는것 같다.

이와같은 “貧乏”을 이 世上에서 없애버리면 없어

지는 만큼 잘 살게되는 것은 当然한 理致일 것이다. “貧乏의 神”을 집으로부터 追放한다면 그집이 豊富하게되는 것과 같이 이 世上으로부터 “貧乏”을 追放하게되면 그와같이 世上은 豊富하게 살기좋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人間社會로부터 貧乏을 없애기 為하여는 한사람 한사람 各自가 맡은바 일을 부지런히 行하면 되지 않을까 生覺한다. 貧乏을 없앨려면 貧乏의 原因을 于先 알必要가 있다. 相對方의 正体를 把握하지 못하면 이를 一掃할 수 없는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貧乏의 原因을 考察하여 볼것 같으면 여러가지가 存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첫째 失業을하면 貧乏하게되고

둘째, 열심히 일을 하는 한집안의 大黑柱가 되는 사람이 죽으면 貧乏하게되는 危險이 發生하게 될 것이고,

셋째로, 아무리 일을 热心히 하여도 그일의 反對給付인 賃金을 싸게 받게되면 貧乏하게 될 것이다.

넷째로, 子女를 많이 갖으면 貧乏의 原因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疾病으로 因하여 医療費가 過多하게支出될 때 貧乏의 原因도 된다.

여섯째, 収入에 比하여 支出이 많게, 돈을 거

세계 쓰는 것도 貧乏의 原因이 된다.

貧乏의 原因이 되는 것을 여러 가지 比較하였으나 이와 같은 原因을 除去한다면 이 社會에서 貧乏이 없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인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貧乏의 原因을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二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① 収入이 적어서 貧乏하게 되는 경우.

② 支出이 많아서 貧乏하게 되는 경우.

위 두 가지로 两大別 할 수 있을 것 같다.勿論 그 가운데에는 両方이 重複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것으로써 또한 貧乏의 原因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失業·倒産· 일하는 사람의 死亡 같은 것은 ①의 경우와 같이 収入이 적어서 貧乏하게 되는 原因의 代表的인 것이고 疾病이나 浪費, 子女를 많이 가지는 것은 ②의 경우와 같이 支出이 많아서 貧乏하게 되는 原因의 代表的인 것이라 하겠다.

이 가운데 疾病의 경우를若干 考察해 볼 것 같으면 疾病으로 因한 医療費의 過多한 支出, 疾病이 發生하면서 職場을 잃게 되는 경우와 이로 因하여 死亡하면서 葬儀費가 過多하게支出될 것이며 나아가 子女들이 남겨짐으로서 貧乏의 原因이 加重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인 것이다. 이렇게 生覺해 볼 것 같으면 疾病이 貧乏의 原因이 된다는 것이相當한 部分(位置)을 占할 것이며, 貧乏의 原因의 王座의인 存在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疾病을 이 社會에서 除去한다면 그만큼 이 社會에서 貧乏이 없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疾病을 없애기 为하여서는 医療業者의 힘만으로 이것이 果然 없어질 것인지 생각해 볼必要가 있는 것이다.

腹痛이 났다, 感氣에 걸렸다, 또는 다리를 다쳤다는지 하는 疾病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医療業者의 医療行為로 이것을 治療하게 된다. 즉 医療業者에게 期待되는 것은 自己가 現在 感受하고 있는 疾病을 빨리 治療하여 好き장을 바랄뿐이며, 빨리 完快하면 長期治療보다 赤是 医療費가 적게 들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도 免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疾病의 治療期間 収入은 減少되고 減少되는 만큼 貧乏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疾病을 除去하려면 單純한 医療業者의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人間은 각

者가 가지는 貧乏의 原因이라고 生覺되는 王座의 存在인 疾病을 없애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또한 조그마한 不注意로 이와 같은 王座의 疾病은 몸에 파고드는 것이다.

특히 우리들은 每日 몇回에 걸쳐 摄取하는 飲食物은 그와같이 그 危驗이 많고 이와 같은 飲食物은 消費者인 国民이나 流過通程을 担當하는 食品市場을 商業者나 또는 料理를 하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限量없이 거쳐서 모든 消費者的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의 經路를 거쳐가는途中 한사람의 不注意로 많은 사람이 伝染病이나, 食中毒이 發生하게 되는 危險性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해서 疾病의 原因이 되는 많은 飲食物에 对하여 疾病에 걸리지 아니하게 하기 为하여 大 함께 努力하여야 하며 이 社會로부터 이를 追放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리하여 이를 追放하는 手段이 바로 “食品衛生에 관계되는 諸法規”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싶다.

## 二、 法規의 目的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食品衛生”的 길잡이의 役割을 하는 것이 “食品衛生에 관계되는 法規”이고 이의 大實의인 法律이 바로 “食品衛生法”인 것이다.

우리들이 登山할 때 道標를 미리 마련하고 올라가는 것과같이 食品衛生에 모든 国民이 心慮할 때 이와 같은 食品衛生法이라고 하는 法律은 道標로서의 役割을 다할 수 없다고 볼것이며 이런 경우 흡사 道標없이 山에 올라갔을 때의 迷者가 되는 경우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食品衛生法은 잘 遵守하지 아니할 때 이 社會에는 크나큰 貧乏의 原因을 만들고 말것이다.

특히 職業으로서 飲食物에 臨하는 사람들은 他의一般人에 比하여 一層 食品衛生法이라고 하는 法律을 遵守할 必要가 있겠고 이와 같은 法律을 깊숙히理解하지 아니하고 또한 遵守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그러므로해서 食品衛生法이라고 하는 法律은 어떤 것을 規定하고 있는 法律인 것인가하고 理解하지

## ☆ 食品衛生 ☆

않으면 아니된다.

이것을 理解하는데 우리 모두 热과 誠을 다하여 야할 것이다.

食品衛生法第1條에서는 위에서 밝힌 여러가지理由를 目的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 法은 食品으로 因한 衛生上의 危害의 防止와 食品營養의 質의 向上을 図謀함으로서 国民保健의 向上과 增進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 三. 用語의 뜻

#### 1. 食品이란?

食品衛生法을 理解하려고 하려면 于先 이 法律에서 使用하고 있는 用語의 뜻을 正確하게 알질 못하면 아니된다.

只令까지 아무生覺 없이 無意識으로 “食品”이라는 낱말을 使用하고 있으나 도대체 “食品”이란 낱말이 어떤것을 指称하는 것인가? 一般的으로 쓰고있는 食品이란 낱말以外에도 食料品, 食料, 食糧, 飲食物, 食物등과 같은 낱말을 쓰고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낱말과 食品과는 어떻게 틀리는 것인가? 惑은 같은 낱말의 뜻을 가지는 것인지, 다만 表現을 달리하는 것인가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食品衛生法에서는 食料品, 食料, 食糧, 食物등과 같은 낱말은 全然나오지 않는다. 다만, 飲食物이라고 하는 낱말은 使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飲食物이라고 하는 낱말은 “食品”이라고 하는 낱말을 說明하기 위하여 補完의 으로 使用되는 것이지 其他 어떤 다른 語味가 있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法에서는 食料, 食物, 食品, 食糧, 飲食物과 같은 것을 指称하는 경우를 “食品”이라고 하는 낱말로 統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食品」이란 도대체 어떤것인가하고 生覺 할 것 같으면 “먹는것”(즉, 齒牙의 上下運動으로써) “마시는 것”을 ① 그대로 飲食할 수 있는것과, ②加工 또는 調理를 하므로 飲食할 수 있는 경우로 区分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①과 ②를 總稱하여 「食品」이라고

이 法에서는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通常 “飲食物”이란 낱말을 使用할때에는 고기(魚)의 꼬리(尾)나 머리(頭)를 除去하는것과 같이 要한部分을 除去한다든지 하여 “사사미”와 같이 調理한다든지하여 바로 飲食할 수가 있는것 같이 하였을 狀態를 가르키는 것이다. 生覺하나 実際로 当而하여 生覺하여 보면 加工한다든지 調理를 한다든지하여 飲食을 할 수 있는것과 그 材料 그대로를 大體의으로 먹는다든지 마실 수 있다든지 하는것도 있다.

食品衛生法에서는 이를 包含하여 마시는것, 먹는것등 모든 “物”을 「食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藥品도 그 捷取하는 方法이 마시게 되는 것이라면 食品이 아니냐하고 疑問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食品이 아니다. 그리하여 医藥品 및 医藥部外品은 食品으로부터 除外된다고 이 法에서는 規制하고 있는 것이다. 즉, 医藥은 혼히 사람들은 마신다든지 먹는다든지 하고 있으나 食品이라고 하여 마신다든지 또는 먹는다든지 하는가의 与否를 区別하기에는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다. 例를 들면 빵이나 쌀에도 비타민이 들어있고 또한 껌에도 비타민이나 구론산이 들어있다. 이와같은 것을 어데까지를 食品이라고 하고 어데까지를 藥이라고 할

수 있을것인가는 大端히 어려운 일이다. 나아가서는 때때로 새로운 形態의 인스탄트화한 食品이 開發되어 나오고 있는것으로 이의 区分도 社會의 变遷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一般的으로 食品이 지니고 있는 固有의 價値以上의 効能效果를 바라는것을 “医藥品”으로 取扱하고 있으나 앞서 言及한바와 같이 새로운 食品類가 続々 出現하고 있으므로서 이의 区別의 判断은 結果의으로健全한 社會常識에 立脚하여 区別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現在에 있어서는 앞에서 例를 들어 言及한바와 같이 비타민이 들어있는 빵이나 쌀은 食品이고 또한 비타민이 들어있는 껌도 食品임은 틀림없다.

“現行食品衛生法第2條”에서 “食品이라고 함은 모든 飲食物을 말한다. 다만 医藥品과 医藥部外品은例外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 2. 添加物이란?

食品을 危險하다고 하는 第一의 發端은 赤痢菌 같은 微生物이지만 第二의 發端은 食品에 여러 가지로 加하여 지는 色素나 香料 같은 添加物이다.

이와같은 添加物은 食品을 加工하여 그品質을 더 잘하기 위하여 使用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自然의 食品과 꽤같게 하기 위하여 食品의 必粧品 같은 느낌으로 使用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한 食品의 製造方法을 簡單하게 하기 위하여 使用하는 것도 있다.

이와같은 것을 몇 가지 간추려 예를 들자면

- ① 甘味劑(설탕, 포도당, 캐라린)
- ② 着色劑(食紅)
- ③ 香料(바니라엔센스, 香辛料)
- ④ 保存料(사루찌루酸)
- ⑤ 殺菌料(사라시粉)
- ⑥ 植料(CMC)
- ⑦ 漂白劑(사라시粉)
- ⑧ 膨脹劑(重曹)

이와같이 添加物은 食品을 製造하는途中에 使用한다든지 食品의 加工이나 保存의 目的으로 食品에 섞는다든지 混合을 한다든지하여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食品衛生法 第2條”에서 “添加物이라고 함은 食品의 製造過程에 있어 또는 食品의 加工, 保存의 目的으로서 食品에 添加, 混合, 浸潤 其他の 方法에 依하여 使用되는 物質을 말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같은 添加物 가운데에는 化学的合成品이라고 하는 一群이 있다.

이것은 天然의으로 있는것이 아니라 藥品과 같이 化学的方法에 依하여 人工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하므로 添加物의 大部分은 이와같은 化学的合成品인 것이다.

例를 들면 化学調味料도 이에 屬하여 캐라린 같은 人工甘味料도 化学的合成品인 것이다. 藥品과 같은 添加物은 모두 이와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最近 鹿島 南方인지 그地点을 알수 없으나 어느

섬에서 日本兵士가 約 20余年間 혼자 살아 있었다고 하는 新聞報道가 있었다. 이 日本兵士는 天然의 狀態에 있는 食品을 끼고 먹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죽을 腹痛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것을 먹지 아니하고 安全한것을 選択하여 먹겠다고 하고 있다. 이와같이 人間은 經驗에 依하여 危險한 食品은 避하고 먹어도 安全한 것만을 오랜 時日을 두고 많은 經驗에서 이를 選択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天然의 食品인것 같으면 어느程度 危險性이 安全하다고나 할것이다.

그렇지만 그 天然의 食品에다 여러 가지 物質을 加하는 添加物 가운데에는 化学的인 方法에 依하여 만들어지는 化学的合成品에 있어서는 아직껏 그 使用의 歷史도 짧고 安全할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 이 많다.

한마디로 말해서 化学的合成品이라고 하는것은 그種類는 大端히 많으며 그 가운데에는 無害하거나 人間에게 必要한것이 있는가하면 또한 毒性이 強한 것도 있는 것이다.

또한 一斷 安全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化学的合成品 가운데에도 오랜 時日을 두고 사람이 먹는다든지 마신다든지 하므로서 어느 程度 人体에 영향이 있겠고 判明되는것이 있는가하면 使用의 時間이 짧아 判明되지 않는것도 있고 또는 不明한것도 많은 것이다. 이와같이 研究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經驗의 不足에 依하여 慢性의 毒性이나 急性의 毒性같은 危害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食品衛生法에 있어서는 化学合成品을 一應全面적으로 그 使用을 禁止하고 있으며 다만 保健社會部令에서 安全하다고 指定하고 있는것에 限하여 그 사용을 許容하고 있는 制度를 採択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現在 法上 그 사용을 許用하고 있는 化学的合成品은 約 250余種으로서 今後 이의 許容의範圍는 漸漸增加하고 있는 傾向이 있는 것이다.

끝으로 “食品衛生法 第2條”에서 “化的合成品이라함은 化学的手段에 依하여 元素 또는 化合物에 分解反應以外의 近學反應을 일으켜 얻은 物質을 말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다음号로 계속)